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620호, 제1621호
- 다. 제출일자 : 2020. 5. 29.
- 라. 회부일자 : 2020. 6. 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수납율(%) (B/A) |
|-------|--------|--------|-----------|---------|-----------|--------------|--------------|
| 2019 | 14,943 | 14,943 | 23,190 | 19,666 | 142 | 3,382 | 84.8 |

- 세입예산현액은 149억 4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31억 9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96억 66백만원을 수납하고, 142백만원은 불납결손하여 3,382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4.8%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이체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19 | 116,869 | 19,800 | - | 80 (-80) | - | 323 | 136,668 | 108,934 | 17,158 | 8,520 | 8,638 | 545 | 10,031 (7.3%) |

- 예산액 1,168억 6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8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66억 68백만원으로, 이 중 79.7%인 1,089억 34백만원은 지출하고 12.6%인 171억 5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4%인 5억 45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100억 3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3건에 8천만원으로
 - 물순환시민거버넌스 구축 56백만원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24백만원
 -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조사 용역 0.4백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예산이체는 4건에 323백만원으로
 - 수질오염원 관리(사무관리비) 8백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기타보상금) 25백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5백만원
 -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285백만원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85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1,366억 68백만원 대비 6.2%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86억 3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5억 4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366억 68백만원 대비 0.4%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00억 31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366억 68백만원 대비 7.3%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 비고 |
|------|---------|--------|---------|----|
| 2019 | 136,668 | 10,031 | 7.3 |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2억 9백만원
- 보조금 정산잔액 : 7억 94백만원
- 낙찰차액 : 34백만원
- 지출잔액 : 59억 95백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수납율(% (B/A)) |
|------|--------|--------|--------------|------------|--------------|-----------------|-----------------|
| 2019 | 25,796 | 25,796 | 25,000 | 25,000 | | 0 | 100.0 |

- 예산현액은 257억 96백만원으로 전액 지방채로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 이체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19 | 81,479 | 20,697 | - | 775 (-775) | | | 102,176 | 83,208 | 12,417 | 1,410 | 11,007 | 83 | 6,469 (6.3%) |

- 예산액 814억 7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6억 9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21억 76백만원으로, 이 중 81.4%인 832억 8백만원은 지출하고 12.2%인 124억 1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3백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64억 6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2건에 7억 75백만원으로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7억 6천만원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15백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14억 1천만원으로 예산현액 1,021억 76백만원 대비 1.4%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10억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83백만원으로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사업에서 발생하였음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64억 6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021억 76백만원 대비 6.3%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 비고 |
|------|---------|-------|---------|----|
| 2019 | 102,176 | 6,469 | 6.3 |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0억원
- 지출잔액 : 44억 69백만원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수납율(% (B/A)) |
|------|--------|--------|--------------|------------|--------------|-----------------|-----------------|
| 2019 | 30,827 | 32,818 | 34,067 | 34,067 | 0 | 0 | 100.0 |

- 세입예산현액은 328억 18백만원으로 340억 67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40억 67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 이체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19 | 30,827 | 1,991 | - | - | 1 | - | 32,818 | 29,637 | 252 | 95 | 157 | 689 | 2,240 (6.8%) |

- 예산액 308억 2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9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8억 18백만원으로, 이 중 90.3%인 296억 37백만원은 지출하고 0.8%인 2억 5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인 6억 89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2억 4천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예산전용 사용은 1건 1백만원으로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1백만원임
- 변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9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28억 18백만원 대비 0.3%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억 5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6억 89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28억 18백만원 대비 2.1%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2억 4천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328억 18백만원 대비 6.8%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불응률 (%) | 비 고 |
|----------|--------|-------|---------|--------|
| 2019 | 32,818 | 2,240 | 6.8 |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억 65백만원
- 지출잔액 : 12백만원
- 예비비 : 18억 63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미수납액 처리 | | 수납율(% (B/A) |
|------|---------|---------|--------------|------------|--------------|---------------------|---------|-------------|----------------|
| | | | | | |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 |
| 2019 | 14,943 | 14,943 | 23,190 | 19,666 | 142 | 3,382 | - | 3,382 | 84.8 |
| 2018 | 240,748 | 240,748 | 242,295 | 238,852 | 28 | 3,415 | - | 3,414 | 98.6 |
| 2017 | 17,161 | 17,161 | 22,014 | 18,676 | | 3,338 | 41 | 3,296 | 84.8 |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149억 4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31억 9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96억 66백만원을 수납하고, 1억 42백만원은 불납결손하여 33억 82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4.8%임.

나) 세수추계 (결산서 p.21~28)

- 금회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55.2%로 총 82억 47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결산 당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15억 48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특히 낮았던 항목은 [표 1]과 같음.

[표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 편성목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 (b)-(a) | 사 유 |
|-------------------|------------|--------------|-------|---------|--|
| 세외수입 | | | | | |
| 하천사용료 | 2,049 | 1,761 | 1,720 | -288 | · 공공사업 개발로 인한 행정재산 면적 감소로 하천점용료 수입 감소 |
| 그외수입 (하천관리과) | 1,601 | 2,562 | 2,562 | 961 | ·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비계획적 수입 증가 |
| 지난연도수입 (하천관리과) | 78 | 3,336 | 72 | 3,258 | ·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 기준 편성 |

-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는 세입예산액 20억 4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7억 61백만원으로 약 2억 88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정비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행정재산 용도폐지 면적이 증가(2015년 3건 2,622㎡, 2016년 7건 3,884㎡, 2017년 3건 4,239㎡, 2018년 7건 152,655㎡, 2019년 5건 449㎡)함에 따라 하천점용료 수입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액 16억 1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5억 62백만원으로 약 9억 6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비계획적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하천관리과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예산액 7천 8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33억 26천만원으로 약 32억 5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해 예산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이 과소하게 편성되는 원인은 최근 3년간 평

균 수납액이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인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특단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다) 미수납액(결산서 p.21~28)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33억 82백만원이며,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 33억 82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차년도 이월액 | 33억 82백만원 |
| - 하천사용료 | 4천 2백만원 |
| - 변상금 | 2억 3백만원 |
| - 시·도비반환금수입 | 5백만원 |
| - 지난연도수입 | 31억 32백만원 |

- 이 중 ‘지난연도수입(소송비용 과년도 체납액 등)’이 31억 32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되는 소송비용 등의 고질적 장기 체납에 따른 것임.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34억 43백만원 중 실제수납은 4.9%인 1억 69백만원 수준임을 감안 할 때 초기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므로 초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담당자가 고질적 장기 체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적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인센티브 부여 등)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 또한, 다음 [표 2]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납세태만(31억 59백만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동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됨.

[표 2]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 | | |
|---------------|----------|-----------|
| 미수납액(차년도 이월액) | | 3,382,248 |
| | 무재산 | 27,325 |
| | 납세태만 | 3,158,959 |
| | 폐업 또는 부도 | 21 |
| | 기타 | 195,943 |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 이체 | 예산현 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19 | 116,869 | 19,800 | - | 80 (-80) | - | 323 | 136,668 | 108,934 | 17,158 | 8,520 | 8,638 | 545 | 10,031 (7.3%) |
| 2018 | 444,015 | 27,184 | 165 | 61 (-61) | 20 (-20) | - | 471,364 | 441,894 | 19,800 | 13,496 | 6,304 | 4,919 | 4,752 (1.0%) |
| 2017 | 227,684 | 41,537 | 0 | 414 (-414) | | - | 269,221 | 231,129 | 27,184 | 8,694 | 18,490 | | 10,908 (4.1%) |

가) 개 요

- 예산액 1,168억 6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8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66억 68백만원으로, 이 중 79.7%인 1,089억 34백만원은 지출하고 12.6%인 171억 5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4%인 5억 45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100억 3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1~61)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100억 31백만원이며, 불용율 30% 이상(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등 16건([표 3] 참고)에 해당함.

[표 3]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명(과) | 사 업 명 | 예 산 내 역 | | | |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내역 | |
| | | | | | 불용액 | 비율(%) |
| 1 | 물순환정책과 |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1,622 | 166 | 1,456 | 89.8% |
| 2 | 물순환정책과 | 개화산 되살리기(유출지하수 재활용) | 500 | - | 500 | 100.0% |
| 3 | 물순환정책과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14,615 | 13,719 | 851 | 5.8% |
| 4 | 하천관리과 | 대림3유수지 기본설계 용역 | 350 | - | 350 | 100% |
| 5 | 하천관리과 |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 1,000 | - | 500 | 50% |
| 6 | 하천관리과 |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 10,790 | 8,851 | 1,069 | 9.9% |
| 7 | 하천관리과 | 빗물펌프장 노후 변압기 개량 | 540 | 369 | 171 | 31.7% |
| 8 | 하천관리과 |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 900 | 94 | 806 | 89.6% |
| 9 | 하천관리과 | 자양유수지 악취저감 용역 | 100 | 7 | 93 | 92.9% |
| 10 | 하천관리과 | 정릉천(성북구) 복개구간 복원화 사업 | 54 | - | 54 | 100.0% |
| 11 | 하천관리과 | 천호유수지 악취저감 용역 | 150 | 47 | 103 | 68.9% |
| 12 | 하천관리과 | 청계천 하류부 족구장 및 음수대 설치 | 100 | - | 100 | 100.0% |
| 13 | 하천관리과 | 풍수해보험료 지원 | 30 | 16 | 14 | 46.1% |
| 14 | 하천관리과 | 홍은교~홍은대교 구간(서대문구) 데크 보행로 조성 | 100 | - | 51 | 51.3% |
| 15 | 하천관리과 |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1구간) 조성사업 | 1,881 | 1,484 | 397 | 21.1% |
| 16 | 하천관리과 | 홍제천(마포구) 망원나들목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 150 | 46 | 104 | 69.4% |

○ 이 중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은 강우시 발생하는 고농도 CSOs의 적정관리 차원에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22백만원 중 89.8%인 14억 5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본 저류조는 굴착깊이가 약 17m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¹⁾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되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당시 용역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심의를 완료하기까지 5개월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이 205일간 중지되어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것임.

- 이는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사료되는 바, 추후 유사사례 추진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 이행 가능 여부, 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같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개화산 되살리기(유출지하수 재활용)’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유출지하수를 수원이 부족한 개화산에 인입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강서구가 시행주체인 자치구 재배정 사업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사전절차 이행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증 결과 요청된 보완사항을 강서구가 이행하지 않고, 구에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구비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 자치구 재배정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예산 배정만 하고 사후 사업관리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추후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치구가 재배정된 사업들에 대해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대림3유수지 기본설계 용역’ 사업은 대림3유수지 내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3억 5천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018년 기본설계 용역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한 후 투자심사 결과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과업기간 2018.5.~2020.4, 총사업비 5억원)’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의견제시가 되어 2019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의 준공이 2020년 4월로 연기(당초 2019.12.)됨에 따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져 불용이 발생한 것임.
 - 이는 연계된 선행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선행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명시이월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명시이월 여부 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2018년 기본설계 용역비(3억 5천만원) 편성 당시 기본설계 보다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먼저 편성하여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선행했다면 이처럼 3억 5천만원

의 예산을 명시이월했다가 결국 불용까지 이르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정이 요구됨.

-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2010년~2011년 침수 피해(2010년 362세대, 2011년 166세대)가 발생한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 대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중 50%인 5억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저류조 설치는 펌프장 설치 이후 침수양상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에 설치토록 결과가 도출되어 타당성 검토회의 결과 저류조 설치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사업을 취소한 것에 기인함.
 -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성급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으로 지금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바,
 -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에 있어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전검토 및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됨.
-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는 2011년 관악산 일대 집중 호우시 신림3교~충무교 일대 하천변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원 중 89.6%인 8억 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018년도에 저류조 설치를 위한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2019년도로 예산을 전액(9억원) 이월하였고, 2019년도 들어와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으나 부지 내 무단점유 물건(비닐하우스 4개동)이 이전되지 않아 공사 추진이 어려워 해당 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및 부지내 일부 폐기물 처리비로 9천 4백만원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8억 6백만원을 불용한 것임.
- 이는 사업공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장애요인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안으로, 추후 이 같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장애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추경 등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정릉천(성북구) 복개구간 복원화 사업’은 정릉천 복개구간 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예산 현액 5천 4백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018년도에 ‘하천복원 종합계획 용역(2018.6.~2020.6.)’과의 연계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2019년도로 5천 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나,
- 2019년도에 ‘하천복원 종합계획 용역’과 교통분야를 협업 증인도로계획부서에서 해당 구간 복원 시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릉천 복원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의 재개 없이 용역사와 합의하에 이월액을 지출하지 않고 타절준공한 것임.

- 이는 상위 관련 종합계획과의 연관성을 간과한 채 다소 성급한 사업추진이 초래한 이월과 불용 사례로, 상위 계획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청계천 하류부 족구장 및 음수대 설치’는 청계천 하류부에 기존 족구장을 철거하고 신규로 족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서울시는 현장 조사 결과 신규 족구장 설치 공간이 부족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기존 족구장을 유지보수 하려했으나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중단한 것임.
- 이는 사업 추진 전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전에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다)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은 없음

라) 예산이체²⁾(결산서 p.79)

- 예산이체는 4건에 3억 23백만원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19.7.25. 시행)에 따른 이체임.

2)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표 4] 예산 이체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이체금액 | | 사유 |
|--------|------------|----------|-----|------|-----|---------------------------------|
| | | | | 감액 | 증액 | |
| 합계 | 4건 | | 323 | 323 | 323 | |
| 물재생계획과 | 수질오염원관리 | 사무관리비 | | | 8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9.7.25.시행) |
| 물재생시설과 | 수질오염원관리 | 사무관리비 | 8 | 8 | | |
| 물재생계획과 | 수질오염원관리 | 기타보상금 | | | 25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9.7.25.시행) |
| 물재생시설과 | 수질오염원관리 | 기타보상금 | 25 | 25 | | |
| 물재생계획과 | 수질오염원관리 | 자산및물품취득비 | | | 5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9.7.25.시행) |
| 물재생시설과 | 수질오염원관리 | 자산및물품취득비 | 5 | 5 | | |
| 물재생계획과 |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 징수교부금 | | | 285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9.7.25.시행) |
| 물재생시설과 |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 징수교부금 | 285 | 285 | | |

마) 예산변경³⁾(결산서 p.83)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에 8천만원으로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조사 용역’에서 각각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 하였음.

3)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표 5] 예산 변경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변경금액 | | 변경승인 일자 | 사 유 |
|---------|--------------------|--------------|----------|------|------|------------|---|
| | | | | 감액 | 증액 | | |
| 3건 | | | 10,605.6 | 80.4 | 80.4 | | |
| 물순환 정책과 |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 201-01 사무관리비 | 183 | 56 | | 2019-07-22 | 물순환 시민문화제 빗물놀이터 연장 운영에 따른 예산 변경 |
| |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 201-03 행사운영비 | 290 | | 56 | | |
| 물순환 정책과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401-01 시설비 | 9,401 | 24 | | 2019-11-13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산 부족 |
|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401-02 감리비 | 730 | | 24 | | |
| 물순환 정책과 | 토양오염 실태조사 | 201-01 사무관리비 | 1 | 0.4 | | 2019-10-14 | 사평역 주변 오염지하수 정화현장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 |
| |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조사용역 | 201-02 공공운영비 | 0.6 | | 0.4 | | |

- 먼저,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의 경우 물순환 시민문화제 기간 중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빗물놀이터를 당초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3일간)까지 운영하려던 계획을 8월 10일까지 연장(14일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족한 행사운영비 예산 5천 6백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융통한 것임.
- 다음으로,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의 경우 시공사 준공 기한(2019.11.15.)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이 동일한 상황에서 시설물 및 각종 자료 인수·인계 준비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투입인력 2명)이 필요해짐에 따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준공에 따른 시설물 및 각종 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한 점은 이해되나 준공을 앞두고 필요한 인수·인계는 준

공 전 충분한 시간계획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공사 준공과 함께 건설사업관리용역에도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조사용역’ 추진 중 오염정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 도입한 화학적 산화공법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2018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공공운영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동일 단위사업(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 내 사업인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무관리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표 6]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조사용역 예산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예산과목 | | | 예산현액 | 변경사용 요구액 | | 변경사용 예산현액 |
|------------|------------------------|-------------------------|----------------|---------------|-------|-------------|-----|--------------|
| | | 세부사업 | 편성목 | 통계목 | | 증 | 감 | |
| 깨끗한 물관리 |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 | 토양오염 실태조사 | 일반운영비 (201) | 사무관리비 (01) | 1,000 | - | 400 | 600 |
| | |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조사용역 | 일반운영비 (201) | 공공운영비 (02) | 600 | 400 | - | 1,000 |

바)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01~202)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86억 38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366억 68백만원 대비 6.3%에 해당됨.

- 사유별 현황([표-8] 참고)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 13건에 26억 96백만원,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1건에 12억 96백만원,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3건에 9억 35백만원, 본공사 및 용역지연 6건 37억 11백만원 등 총 23건(86억 38백만원)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표 7]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유 별 | 2018 | |
|----------------|------|-------|
| | 건수 | 이월액 |
|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 | 13 | 2,696 |
|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 1 | 1,296 |
|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 3 | 935 |
| 본공사 및 용역지연 | 6 | 3,711 |
| 계 | 23 | 8,638 |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 9]와 같음.

[표 8]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 현액 | 사고 이월액 | 집행 잔액 | 이월률 | 사 유 |
|-----|------------|-----------|----------|-----------|----------|-------|---|
| 13건 | | | 12,436 | 7,373 | 521 | 59.3% | |
| 1 | 물순환 정책과 | 빛물마을 조성사업 | 3,018 | 1,296 | 57 | 42.9% | 공사발주 및 낙찰자 선정 완료 후 동절기 공사 제한으로 공기 부족 및 '20년 07월 준공기한으로 사고이월 |

| 연번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 현액 | 사고 이월액 | 집행 잔액 | 이월률 | 사 유 |
|----|------------|--|----------|-----------|----------|--------|--|
| 2 | 물순환 정책과 |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 | 600 | 241 | - | 40.2% |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중인 용역으로 금차 용역기간이 19.11.4~20.6.30.로 준공기 한이 미도래되어 19년도 미 집행 금액에 대해 사고이월 |
| 3 | 하천관 리과 |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 650 | 292 | 8 | 45.0% | 정책결정을 위한 추진방안 검토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 됨에 따라 이월 |
| 4 | 하천관 리과 |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 1,173 | 978 | - | 83.4% | 지역주민 의견 반영 및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설계용 역 연장되어 공사착공이 늦어 짐에 따라 이월(건설폐기물처 리 용역) |
| 5 | 하천관 리과 | 목동천(중랑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 1,000 | 450 | 288 | 45.0%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행으 로 공사 및 감리발주가 '19. 11월 착공됨에 따라 절대공 기 부족으로 이월 |
| 6 | 하천관 리과 | 성내천(송파구) 유지용수 공급펌프 교체 | 400 | 360 | 40 | 90.0% | 3분기 발주로 제작기간이 부 족함에 따라 이월 필요 |
| 7 | 하천관 리과 | 우이천(성북구)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 1,100 | 748 | 46 | 68.0% | 반대 민원 설득 및 지역수자 원관리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등으로 '19.11월에 착공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 월 |
| 8 | 하천관 리과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 225 | 225 | - | 100.0% | 준공기한('20.4월) 미도래로 이월 |
| 9 | 하천관 리과 |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 3,462 | 2,493 | 9 | 72.0% | '19.10월 착공하였으며 준공 기일 미도래로 이월 |
| 10 | 하천관 리과 | 청계천 구간(성동구) 둔치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00 | 31 | 22 | 31.1% |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용역기 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 |
| 11 | 하천관 리과 | 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 | 568 | 171 | - | 30.0% | 관련부서(도로계획과) 성과결과 를 반영하고자 용역기간이 연 장됨에 따라 이월 |

| 연번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 현액 | 사고 이월액 | 집행 잔액 | 이월률 | 사 유 |
|----|-------|-----------------------------|----------|-----------|----------|-------|---|
| 12 | 하천관리과 | 하천 편입토지 보상 | 40 | 39 | - | 98.1% | 감정평가 결과 확보된 예산보다 보상액이 초과되고, 소유자가 일괄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20년에 부족액 확보후 보상하고자 이월 |
| 13 | 하천관리과 | 홍은교~홍은대교 구간(서대문구) 데크 보행로 조성 | 100 | 49 | 51 | 48.7% | '19.7월 추경 반영후 설계 용역 중이며, 현황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소요 및 공법 선정 등의 사전 절차 이행 예정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

- ‘빗물마을 조성사업’은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물순환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의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 18백만원 중 42.9%인 12억 96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 중 주민워크숍 개최,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등으로 빗물마을 3개소(은평구, 도봉구, 구로구)의 설계가 지연되면서 2019년 11월에야 공사계약이 이루어져 동절기 공사제한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것임.
-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점은 이해되나, 최대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앞으로는 빗물마을 선정공모 및 용역 설계와 공사착공을 서로 분리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참고로, 빗물마을 3개소는 동절기 이후 2020년도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도봉구와 은평구는 공사완료한 상태이고, 구로구는 도로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중으로 7월 우기철 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임.
-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도림천 ~ 관악산을 연결하는 생태·보행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1억 73백만원 중 83.4%인 9억 78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2019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타당성검토 심의, 건설기술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2019년 11월에야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착공 지연으로 공사비를 이월한 것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행해야하는 사전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용역기간 설정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향후 보다 면밀하게 사전절차 이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설계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묵동천(중랑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은 훼손된 도시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적 기능 회복을 위해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중 45%인 4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4)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평가를

2019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행하였고,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비를 이월한 것임.

- 이 역시 사전에 이행해야할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에 대한 소요기간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는 노력이 요구됨.

○ ‘우이천(성북구) 복개구간 복원화사업’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한천로 선형변경계획에 따라 폐쇄 예정인 기존 한천로의 우이천 복개구간을 복원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1억원 중 68%인 7억 4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8년 10월에 완료하고 2019년 공사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제방상부 공원면적 확대를 원하는 주민의견 반영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2019년 10월에야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것임.

- 이처럼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한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절차의 경우는 충분히 사전에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2 생략
- ② 생략

예측가능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이 신중치 못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 이행 가능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은 ‘중랑천 홍수방지 종합계획’과 ‘중랑천하류 생태회복사업’의 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예산현액 34억 62백만원 중 72%인 24억 93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 중 ‘중랑천하류 생태회복사업’은 2018년 11월 공사발주 하면서 적격심사 중 1순위 업체와 실적 관련 계약분쟁이 발생하였고, 서울시 승소로 2019년 5월 2순위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수방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10월에야 착공되어 연내 공사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된 것임.

- 이처럼 업체와의 계약분쟁이 진행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공사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추경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홍은교 ~ 홍은대교 구간(서대문구) 데크 보행로 조성’ 사업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조사 등 효과적 과업수행을 위한 사전 조사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예산현액 1억원 중 48.7%인 4천 9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예산집행 가용일수가 많지 않은 제약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절차가 많은 사업이나 민원이 있는 사업 등은 가급적 추경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편성된 경우에는 조속한 예산배정과 집중적인 예산 투입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정수결정액(A) | 수납액(B) | 불납결손액(C) | 미수납액(A)-(B)-(C) | 미수납액 처리 | | 수납율(%) (B/A) |
|------|--------|--------|----------|--------|----------|-----------------|---------|----------|-----------------|
| | | | | | |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 |
| 2019 | 25,796 | 25,796 | 25,000 | 25,000 | | 0 | | | 100.0 |
| 2018 | 3,554 | 3,554 | 3,555 | 3,555 | | 0 | | | 100.0 |

가) 개요

- 예산현액은 257억 96백만원으로 전액 지방채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이체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19 | 81,479 | 20,697 | - | 775 | | - | 102,176 | 83,208 | 12,417 | 1,410 | 11,007 | 83 | 6,469 (6.3%) |
| 2018 | 77,732 | 11,901 | - | 659 | | - | 89,633 | 68,580 | 20,697 | 18,365 | 2,332 | 2 | 354 (0.4%) |

가) 개요

- 예산액 814억 7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6억 9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21억 76백만원으로, 이 중 81.4%인 832억 8백만원은 지출하고 12.2%인 124억 1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3백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64억 6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62~63)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021억 76백만원 대비 6.3%인 64억 69백만원이며, 불용률 30%(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등 6건에 해당함.

[표 9]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명(과) | 사 업 명 | 예 산 내 역 | | | |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내역 | |
| | | | | | 불용액 | 비율(%) |
| 1 | 하천관리과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 24,636 | 18,132 | 520 | 2.1% |
| 2 | 하천관리과 | 응암동 불광천변 간이펌프장 설치 | 1,800 | 0 | 1,800 | 100.0% |
| 3 | 하천관리과 | 중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1,835 | 1,077 | 758 | 41.3% |
| 4 | 하천관리과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 24,840 | 3,191 | 1,127 | 4.5% |
| 5 | 하천관리과 | 상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3,931 | 3,191 | 740 | 18.8% |
| 6 | 하천관리과 | 박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4,452 | 3,232 | 580 | 13.0% |

- ‘응암동 불광천변 간이펌프장 설치’는 2018년 8월 28일 기습 폭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불광천변 저지대의 침수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018년 12월 용역에 착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간이펌프를 설치하더라도 반지하 주택 등의 완전한 침수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주민설명회 시 하천변 경관 훼손 등으로 다수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간이펌프장을 역류방지 배수문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른 것임.
 - 이에 당초 예산 18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하였으나 2019년 예산편성 명칭과 2020년 실제 사업내용과 차이가 있어 ‘불광천변

(응암동) 역류방지 배수문 설치' 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예산 18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임.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당보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이 같은 면밀한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음.

○ '증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는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배수용량을 2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35백만원 중 41.3%인 7억 5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증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을 2019년 6월 준공하고 펌프장 건축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본 빗물펌프장이 2019년 1월 증산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주택건설공사와 통합시행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불용한 것임.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부서 협의 단계에서 본 사업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2019년도에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면 이 같은 예산불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에는 연계된 사업 간에 추진일정,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사용은 없음.

라)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⁵⁾(결산서 p.84)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7억 75백만원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서 각각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7억 6천만원,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1천 5백만원 융통하여 사용함.

[표 10] 예산 변경사용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변경금액 | | 변경승인 일자 | 사 유 |
|-------|-------------|--------------|--------|------|-----|------------|---------------------------------------|
| | | | | 감액 | 증액 | | |
| 2건 | | | 20,321 | 775 | 775 | | |
| 하천관리과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 401-01 시설비 | 19,288 | 760 | | 2019-08-30 | 공사로 인해 점유되는 토지의 일시사용, 영업권, 물건(지장물) 보상 |
| | | 401-03 시설부대비 | 15 | | 760 | | |
| 하천관리과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 401-02 감리비 | 1,018 | 15 | | 2019-06-14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조달계약수수료 확보 |
| | | 401-03 시설부대비 | | | 15 | | |

- 이는 공사 장비 및 자체 진출입을 위해 점유되는 토지의 일시 사용·영업권·물건(지장물)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융통한 것과 시설공사 조달계약 수수료 확보를 위해 감리비 일부를 융통하여 사용한 것임.

5)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조달계약 수수료의 경우 당초 예산서 상에 없던 시설부대비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집행한 것은 의회의 사전 심사 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03)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12건에 110억 7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814억 79백만원 대비 13.5%에 해당됨.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 12]와 같음.

[표 11]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 | 사업명 | 예산 현액 | 사고 이월액 | 집행 잔액 | 이월률 | 사 유 |
|----|-----------|---------------------------------|----------|-----------|----------|-------|--|
| 1 | 하천관 리과 | 염창1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3,565 | 1,484 | 56 | 14.6% | ‘염창키움센터’ 공사가 2020년 1월 준공예정으로서, 전체공정의 공사협조가 필요하고, 유수지 복개로 인해 주민개방공간에 대한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공사 준공기한을 연 기함에 따라 원인행위 일부금액에 대한 사고이월이 필요 |
| 2 | 하천관 리과 |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 310 | 114 | - | 36.7% | 인문, 사회 경제부분 등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청 통계자료가 2020.4월 발표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분석하기 위한 추가과업기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
| 3 | 하천관 리과 |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기본 실시설계 용역 | 1400 | 661 | 298 | 47.2% | 용역의 과업기간이 360일로 ‘19. 5. 7일 착수하여 12월 현재 공정을 55%로 수행중이며,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기성준공금 지급 후 전액이월 |

○ ‘**염창1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는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배수용량을 2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5억 65백만원 중 14.6%인 14억 8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맞벌이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염창1 빗물펌프장 2층에 ‘염창키움센터’를 202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어 전체 공정의 공사협조가 필요하였고, 당초 계획된 우수지 복개 과정에서 상부 주민개방공간의 활용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공사 준공기한을 당초 2019년 12월 15일에서 2020년 1월 31일로 연기하였고 이에 원인행위 일부금액을 사고이월한 것임.

- 이는 본 사업의 부수공사인 우수지 복개와 관련하여 상부에 형성되는 주민개방공간에 대한 향후 활용 용도에 대해 지역주민들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부족했음에 기인한다 할 것임.

○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사업은 2010년 침수지역인 한강로 일대와 삼각지 및 신용산 지하차도 주변 방재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3억 1천만원 중 36.7%인 1억 1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6)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

6)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빗물펌프장과 유역분리 관로공사를 2018년 4월과 10월에 각각 완료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⁷⁾에 따라 완료된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을 2019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후평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것임.

- 이처럼 사후평가 용역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는 용역계약을 차수별 계약으로 변경하여 적정예산만 편성함으로써 명시이월된 예산이 또다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② ~ ④ 생략

7)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C) | 미수납액 (A)-(B)-(C) | 미수납액 처리 | | 수납율(% (B/A) |
|------|--------|--------|--------------|------------|----------|---------------------|---------|-------------|----------------|
| | | | | | |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 |
| 2019 | 30,827 | 32,818 | 34,067 | 34,067 | | | | | 100.0 |
| 2018 | 28,935 | 30,804 | 31,498 | 31,498 | | | | | 100.0 |
| 2017 | 28,594 | 29,745 | 29,579 | 29,579 | | | | | 100.0 |

가) 개요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28억 18백만원으로 340억 67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40억 67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나) 세수추계(결산서 p.30 ~ 31)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10.5%로 총 32억 4천만원의 차가 발생하였음.
-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큰 세입과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대표적이며, 이는 전년도 강동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의 사고이월액 16억 27백만원이 발생한 것에 기인함.

[표 12]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 편성목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 (b)-(a) | 사 유 |
|------------|------------|--------------|--------|---------|--|
| 경상적 세외수입 | | | | | |
| 공공예금이자수입 | 203 | 185 | 185 | -18 |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
|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 그 외 수입 | 0 | 9 | 9 | 9 | 회계마감으로 인한 기금 정산액 잡수입 처리 |
| 보조금 | | | | | |
| 기금 | 28,404 | 28,143 | 28,143 | -261 | 물이용부담금 징수수료 감소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 | | | |
| 순세계잉여금 | 2,119 | 2,416 | 2,416 | 297 |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0 | 1,324 | 1,324 | 1,324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세입 미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처리 (2018년도 기금보조금 집행잔액) |
| 전년도 이월금 | 0 | 1,991 | 1,991 | 1,991 | 이월금 세입 미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처리(환경기초시설설치비 등)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은 예산액 284억 4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억 61백만원 감소한 281억 43백만원으로, 감소사유는 물이용부담금 징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 이체 | 예산현 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19 | 30,827 | 1,991 | - | - | 1 | - | 32,818 | 29,637 | 252 | 95 | 157 | 689 | 2,240 (6.8%) |
| 2018 | 28,935 | 1,868 | - | - | | - | 30,804 | 25,768 | 1,990 | 195 | 1,795 | 1,324 | 1,721 (5.6%) |
| 2017 | 28,594 | 1,151 | - | | 7 (-7) | - | 29,745 | 24,600 | 1,868 | | 1,868 | | 3,277 (11.0%) |

가) 개 요

- 예산액 308억 2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9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8억 18백만원으로, 이 중 90.3%인 296억 37백만원은 지출하고 0.8%인 2억 5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인 6억 89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2억 4천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64~65)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1건으로 이는 당해연도 내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것임.

[표 13] 불용률 3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내역 | | | |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 비율 |
| 1 | 물순환정책과 | 예비비 | 1,863 | - | 1,863 | 100.0% |

다) 예산전용(결산서 p.75)

- 예산 전용사용은 1건에 1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1백만원을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음([표 15] 참고).

[표 14]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전용금액 | | 전용일자 | 사유 |
|------------|-------|-----------------|------|------|-----|----------------|------------------------------------|
| | | | | 감액 | 증액 | | |
| 1건 | | | 64.4 | 1.3 | 1.3 | | |
| 물순환 정책과 | 인력운영비 | 303-02 성과상여금 | 42.6 | 1.3 | | 2019-11- 26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부족분 확보 |
| | 인력운영비 | 204-02 직급보조비 | 21.8 | | 1.3 | | |

- 이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사업의 주체인 한강사업본부에서 광나루안내센터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산출하여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요청해 옴에 따라 예산 지출계획이 없는 성과상여금 잔액에서 필요금액(1,293천원)에 대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것임.

라) 이체·변경사용

- 예산의 이체 및 변경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04)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1건 1억 57백

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328억 18백만원 대비 0.5%에 해당되며 사고이월 30%이상 사업은 '서울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사업 1건임.

[표 15] 사고이월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 | 사업명 | 예산 현액 | 사고 이월액 | 집행 잔액 | 이월률 | 사 유 |
|----|------------|---------------------------------------|----------|-----------|----------|-------|---|
| 1 | 물순환 정책과 | 서울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 수립 | 363 | 157 | 0 | 43.3% | -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환경부 목표수질 고시 지연으로 당초 용역기간이 '18.7월~'19.8월에서 '18.7월~'20.12월로 연장되어 일부 기성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함 |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총량제 목표수질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환경부의 목표수질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기한을 2019년 8월에서 2020년 12월로 연기하고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사료됨.

[붙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연번 | 시 정 권고사항 | 내 용 | 소관실국 (부서명) |
|----|---------------------------------------|---|-------------------------|
| 1 | 치수 및 하천관리목적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예산불용 지양 | <p>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는 청계천 하류부 족구장 및 음수대 설치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뒤 해당 사업내용이 체육시설정비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 추진을 중단한 뒤 전액 불용함.</p> <p>예산불용사유로 하천내 ‘체육시설 정비사업’이라는 예산편성시와 동일한 사업내용을 든 것은 형식적이고 무분별한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p> <p>또한 기초 자치단체 및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피하지 않는 예산집행태도는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귀결됨.</p> <p>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예산목적에 맞는 지 먼저 검토하고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추경(감추경)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기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p> | 물 순 환 안 전 국 (하천관리과) |
| 2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업무 관리 철저 | <p>e-호조 시스템 내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자료 입력오류로 인한 결산서 상 결산수치와 e-호조 결산 입력자료 수치 간의 불일치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과 일반회계 결산기준 간의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는 하나, 두 수치 간의 차이는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물순환안전국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업무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원인규명을 포함한 철저한 결산업무관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p> | 물 순 환 안 전 국 (물순환정책과) |

37. 치수 및 하천관리목적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예산불용 지양

[청계천 하류부 족구장 및 음수대 설치사업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는 청계천 하류부 족구장 및 음수대 설치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뒤 해당 사업내용이 체육시설정비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추진을 중단한 뒤 전액 불용함.

민원으로 인해 해당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예산불용사유로 하천내 ‘체육시설 정비사업’이라는 예산편성시와 동일한 사업내용을 든 것은 형식적이고 무분별한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피하지 않는 예산집행태도는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귀결됨.

청계천 하류부 족구장 및 음수대 설치사업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
|-----|-----|-----|-----|-----|----|
| 시설비 | 100 | 0 | 0 | 100 | |

□ 사업내용

- 위 치 : 청계천 하류부 족구장 3개소
- 사업내용 : 족구장 환경 개선(배수로 공사, 마사토 포장, 펜스 정비 등)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9. 8. ~ 10.

나. 시정권고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예산목적에 맞는 지 먼저 검토하고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추경(감추경)예산제도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기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38.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업무 관리 철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는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상 사무관리비 ₩108,786,000 전액을 불용한 것으로 결산하였으나, e-호조 입력자료 상에는 ₩103,521,027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64,973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 세입결산자료도 결산서 상의 금액과 e-호조 결산 입력자료 간의 차이가 있음.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와 e-호조 결산 입력자료 간의 차이 원인은 공기업회계 결산내역을 e-호조 시스템상 공기업 세입·세출자료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업무 처리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됨.

난지물재생센터 사무관리비 결산오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통계목 | 예산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결산서 | 사무관리비 | 108,786 | 0 | 0 | 108,786 |
| 실제결산 | 사무관리비 | 108,786 | 103,521 | | 5,264 |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오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 |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
| | | | 수납총액 | 환급액 | 실제수납액 | | |
| 결산서 | 1,302,978,983 | 1,365,729,204 | 1,333,557,450 | 2,607,917 | 1,330,949,533 | 215,728 | 34,563,943 |
| 실제결산 | 1,302,978,983 | 1,355,585,753 | 1,332,492,495 | 1,542,962 | 1,330,949,533 | 229,443 | 24,406,777 |

□ 사업내용

-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부 서 :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사무관리비 : 108,786천원
- 사업기간 : 2019. 01. ~ 12.

나. 시정권고

e-호조 시스템 내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자료 입력오류로 인한 결산서 상 결산수치와 e-호조 결산 입력자료 수치 간의 불일치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과 일반회계 결산기준 간의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는 하나, 두 수치 간의 차이는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변질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물순환안전국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업무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원인규명을 포함한 철저한 결산업무관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